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376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년 5월 25일
-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2. 제안이유

-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중 풍납캠프를 폐쇄하고 관악캠프는 복합평생교육 기관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영어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서·교양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등의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 나. 조례의 목적을 서울특별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도록 변경함(안 제1조).

- 다.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중 풍납캠프를 삭제하고, 서울자유시민대학과 모두의 학교를 추가함(안 제2조 및 별표 1).
- 라.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운영,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 마. 이용료 면제대상을 청소년 중심에서 취약계층 일반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교육경험 기회를 높이고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이용료 등의 징수와 감면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6조,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바. 우리시가 설치·운영하고 새로 조성하는 평생교육기관(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포함)의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나 평생교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사. 평생교육기관의 시민운영·참여를 제도화하여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시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21.4.8. ~ 4.28.)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전부개정 배경 및 필요성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본 전부개정안')은 서울영어 및 창의마을의 기능전환과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 본 전부개정안은 현행 9개 조문에서 11개로 조문수가 증가하며, 각 조·항·목의 내용도 변경하고 있음.
 -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명의 변경(안 제명,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 목적의 재정의(안 제1조, 영어마을 운영 → 평생교육기관 운영), 시설의 재정의(안 제2조, 명칭, 위치 등), 영어·창의마을을 위한 규정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기능(안 제3조) 명시, 이용료(이용료:안 제5조, 감면:안 제6조, 반환:안 제7조)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관리의 위탁(안 제8조)을 규정하고, 시민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안 제9조)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	전부개정안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명칭 등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4조 이용대상	제4조 기능
제5조 이용료	제5조 이용대상
제6조 이용료의 감면	제6조 이용료 등 징수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제7조 이용료 등의 감면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 다른조례의 준용	제9조 운영·관리의 위탁
	제10조 시민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11조 시행규칙

- 서울 영어·창의마을 중 풍납캠프를 폐쇄하고, 관악캠프는 복합 평생교육 기관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영어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서·교양 함양을 위해 평생교육시설의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등의 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국은 해외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학령기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영어 교육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영어·창의마을 개소초기에 비해 영어 체험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실수요가 많은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영어·창의마을은 개소 당시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교육청 등의 투자, 보편화된 원어민 영어교육(학교 원어민 강사배치, 인터넷, 공중파(EBS2)·케이블 TV의 영어교육 방송 등) 등 원어민 수업의 차별성이 감소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영어마을 기능의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짐.
- 평생학습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련 규정의 제정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시설의 수와 운영프로그램의 수로 평생교육 사업의 성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실제 평생교육국의 업무와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는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분야에서의 역할을 계획 수립과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협력관계 구축, 평생교육 참여촉진 등의 추진과 지원으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와 상충성은 없는지, 평생교육국의 직접 사업수행은 조례 상 규정된 평생교육국의 업무와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안 제1조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평생교육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수립·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법령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2조의3(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정책 수립·시행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평생교육법」 제5조는 개정(2021.6.8.)되어 시행(2021.12.9.)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된 조문은 평생교육정책의 수립·추진에서 평생교육사업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으나, 평생교육사업의 추진이 시설설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1.12.9. 시행 예정인 「평생교육법」 제5조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는 법령에 따른 규정 이외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한 평생교육국의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이 추진될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사업의 직접수행을 위한 시설설치 조례의 필요성,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저하 우려, 상위법령의 업무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평생교육진흥원 역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11.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2.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세부내용 검토

- 본 전부개정안은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개정방식의 적정성, 규율해야 할 평생교육기관의 누락, 자의적 이용료 결정방식, 이용료 감면설계의 적정성, 시민운영위원회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1) 개정방식의 적정성

- 본 전부개정안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 또는 폐지 후 제정 방식이 아닌 전부 개정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기존 조례')는 영어·창의마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이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행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신규 조례')는 평생 학습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존 조례가 규율하는 대상은 '영어·창의마을'이며, '영어·창의마을의 운영'으로 사료됨.
-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으로는 '전부개정' 방식과 '폐지 후 제정' 방식이 있으며, 기존 자치법규와 신규 자치법규 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신·구 양 자치법규 간 전면적 또는 본질적인 변경이 있을 때에는 폐지 후 제정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방식의 선택 〉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으로는 전부개정 방식과 폐지·제정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 방식은 해당 자치법규의 전부를 개정하는 방식이고 폐지·제정 방식은 기존 자치법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면서 해당 자치법규의 부칙에서 기존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기존의 자치법규와 신 자치법규 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제도 그 자체가 신·구 양 자치법규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폐지·제정방식을 취한다.

- 본 전부개정안은 규율대상을 영어·창의마을에서 평생학습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직접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변경되어 기존 조례와 신규 조례는 규율하려는 대상(영어·창의마을 VS 평생교육기관)과 방식이 상이하여 본질적인 동질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부개정정보다는 폐지 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 개정 방식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2) 평생교육기관 지정의 적정성

- 안 제2조는 [별표1]과 같이 평생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총 6개소임에도 불구하고, 3개소만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기타 3개소를 제외한 사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별표1 〉

[별표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제2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종로구 송월길 52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확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강동구 고덕로 399	"
서울자유시민대학 은평학습장	은평구 은평로 245	"
서울 영어·창의마을 수유캠프	강북구 삼각산로 43	세계시민 역량강화, 체험기회 제공
서울 영어·창의마을 관악캠프	관악구 낙성대로 70	
모두의 학교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시민주도 프로젝트형 평생교육모델 개발, 확산

〈서울자유시민대학 권역별 캠퍼스 현황〉

구분	본부캠퍼스	시민청학습장 (도심권)	은평학습장 (서북권)	동남권캠퍼스	중랑학습장 (동북권)	금천학습장 (서남권)
위치	종로구 송월길 52	중구 세종대로 110 지하 2층	은평구 은평로 245	강동구 고덕로 399	중랑구 망우로 67길 10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시설 규모	1,485㎡ (강의실 6개, 세미나실 등)	태평홀 (367㎡) 워크숍룸(196 ㎡)	738㎡ (강의실 5개, 도서관 등)	7,211㎡ (강의실 11개, 사무실 등)	595㎡ (강의실 1개, 사무실 일부)	65㎡ (강의실 1개)
임대 구분		무상임대			무상임대	무상임대

- 평생교육국은 서울자유시민대학 중 시민청, 중랑 및 금천학습장 세 곳은 무상임대를 통해 강의실 등에서 프로그램 강좌만 운영하고 있는 학습장으로 [별표1]에 미반영하였고,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서울시 출연재단으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 [별표1]에 미표기한 것”으로 누락한 사유를 제출하고 있음.

-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두의학교는 [별표1]에 등재되어 있고, 엄밀한 기준으로 보면 서울자유시민대학도 서울시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바,
 - 평생교육국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자유시민대학을 [별표1]에서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안 제2조의 [별표1]에 누락된 자유시민대학은 서울시의 평생학습기관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는바, 안 제5조의 이용료와 안 제6조의 감면도 적용할 수 없으며, 안 제7조의 반환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 제8조의 위탁, 안 제9조의 시민운영위원회의 운영범위 밖에 있게 되는바, 별표 1의 평생교육기관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3) 이용료의 변경·결정·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승인’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이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이용료 등은 [별표 2]에 따르고,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은 [별표 3]의 범위에서 정하고, 서울시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별도로 각각의 별표에서는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료 등 징수는 시의 승인’으로만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이용료는 ‘조례 별표의 개정’와 ‘고시’, ‘시의 승인’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 제2항의 [별표2] 〉

[별표 2]

서울자유시민대학 이용료(학습비) 등 징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징수기준	학습비	비 고
특별 강좌	· 특별 기획 과정, · 공공성 중심 과정(서울학, 시민학 등)	무 료	
정규 강좌	· 5주 과정 (2시간*5회)	10,000원	시간당 1,000원 기준
	· 10주 과정(대학연계 과정 포함) (2시간*10회)	20,000원	
전문 강좌	· 전문가역량 과정	30,000원	
	· 학점은행제 과정	30,000원	학점은행제 승인 기준
기 타	· 교재비 및 기타 학습재료비	실 비	사용 후 반환하지 않음

※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의 이용료 등 징수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평생교육시설의 이용료 변경 및 확정의 한 방법인 ‘시의 승인’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각 별표의 각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문에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5조 제2항의 [별표3] 〉

[별표 3]

서울 영어·창의마을 이용료 등 징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이 용 료	비 고
숙 박	정 규 반	5박 6일	340,000원 이내	개인·단체
		4박 5일	16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2박 3일	96,000원 이내	개인·단체
	특 별 반	5박 6일	400,000원 이내	개인·단체
	방학캠프	12박 13일	800,000원 이내	개인·단체
		9박 10일	650,000원 이내	개인·단체
주 말 반	1박 2일	120,000원 이내	개인·단체	
비숙박	방 과 후	1개월	300,000원 이내	개인·단체
	당 일 반	1일	50,000원 이내	개인·단체
	정 규 반 (1일 6시간 기준)	5일	14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3일	9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2일	70,000원 이내	단체에 한함

※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의 이용료 등 징수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용료를 ‘시의 승인’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은 계절별 프로그램, 단기·특별 프로그램 또는 수시로 진행되는 특강 등 프로그램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의 이용료 변경조차도 ‘변경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조례개정이나, 고시를 통하지 않고, 시의 승인만으로 이용료를 변경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별표1]은 실질적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 [별표1]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또는 시의 승인만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이용료를 결정·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평생교육국이 고시를 통해 영어·창의마을 이용요금을 알린 내역은 2006년 이후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단 6회만 있었고, 프로그램의 폐지 및 신설로 인해 이용료의 변경이 다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장 6년간 고시를 시행하지 않고 ‘시의 승인’으로만 이용료를 결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탄력적 운영이 아닌 서울시의 자의적인 운영을 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영어·창의마을 이용요금 고시 내역 〉

시보 호수	발행일	고시명
제3591호	2020.06.25	제2020-266호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제3551호	2019.11.14	제2019-372호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제3335호	2016.02.18	제2016-44호 서울영어마을 이용요금 고시
제2966호	2010.03.18	제2010-92호 서울영어마을(관악캠프) 이용요금 고시
제2801호	2007.11.08	제2007-413호 서울영어마을 이용요금
제2693호	2006.03.30	제2006-107호 서울영어마을 이용요금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보

- 본 전부개정안은 평생교육시설의 이용료를 ‘별표의 이용료의 범위 내’ 또는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제약조건이 없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료의 적정수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승인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 검토없는 평생학습기관의 요청 승인 등으로 인해 과다징수 또는 과소징수 등도 우려되는데,

- ‘시의 승인 후 고시’ 또는 ‘승인 후 검토의견을 의회에 제출 후 고시’ 등 평생교육시설의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이용료의 감면 대상의 적정성

- 안 제6조는 [별표 4]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7개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자를 규정하고 있고, 5개 법률에 따라 사용료의 50% 감면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음.
- [별표 4]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영어창의마을의 이용료를 감면받지 못하나, 경로우대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외국인 근로자는 영어 창의마을의 이용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이용료를 설계하였음.

[별표 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면제·감면 대상 및 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대상 및 기준
면 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가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 면 (50%)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구 분	대상 및 기준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4) “다둥이 행복카드”(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소지한 가정이 이용하고자 할 때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6)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단,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은 적용 제외)

※ 학습비 감면 대상자는 해당 자격요건 취득일 기준으로 학습비에 대한 면제와 감면을 적용함(소급신청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평생교육국은 “경로우대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또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보아 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의 영어·창의마을이용 시 감면을 사실상 제한하고, 시설의 목적과 역할, 기능을 무시하여 불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감면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 한편, 경로우대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은 각 법률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그 감면을 규정하거나 권장하는 조문이 없는바, 외국인 근로자의 영어마을 이용료 감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외국인 근로자의 공공시설 등의 감면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무교육을 규정
한 법률은 있으나, 공공시설 등의 감면한 법률을 찾지 못하였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또한, 감면대상자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국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감면대상자별 감면이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청소년시설의 경우와 같이 과도한 감면을 규정하고, 감면으로 인한 시설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지 않는 등 수탁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시민운영위원회의 효과성

- 안 제9조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이 시민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시민운영위원회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정·협의 등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로, 평생교육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설마다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본 전부개정안이 규율하는 범위는 안 제2조의 [별표 1]의 시설로
한정될 것인바, 본 시민운영위원회 평생교육기관의 일부시설로 한정되어
구성될 것으로, 실제 효과성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민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의 내부 조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정관 또는 운영규칙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극소수의 기관만이 시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효과성이 적다는 점,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사례는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6) 본칙과 관련한 그 외 검토 사항

- 부수적으로 안 제8조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민간 또는 다양한 기관에 위탁 운영될 예정인바,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전부개정안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시설운영의 근간이 되는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본 전부 개정안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부개정으로 인해 평생교육시설의 실제 운영에 미칠 영향은 낮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각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5조 중 ‘모두의 학교’는 고유한 시설의 이름으로 띄어쓰기 없이 ‘모두 의학교’로 사용하고 있는바, 정확한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시설명칭의 변경 또는 시설의 고유 명칭(띄어쓰기 없는 명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아울러 본 전부개정안에는 ‘모두의 학교’,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의 장’ 등 정의 규정이 없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사용 및 이해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전부개정안 중 [별표 1]의 ‘서울자유시민대학’이라는 시설명칭은 의회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해당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바, 이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7) 부칙

- 안 부칙은 총 4개 조항으로, 시행일, 영어마을 캠프의 명칭 및 지위, 이용료 징수·감면 및 민간위탁의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전부개정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부칙은 모두 실효되어 삭제되는바, 기존 조례의 부칙 중 신규 조례의 부칙으로 규정해야 할 부칙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음.

라. 결론

- 본 전부개정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시설은 총 6개 시설로, 서울자유시민 대학의 캠퍼스와 모두의학교는 모두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무로 이관되어 운영 중으로 본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민간위탁, 사용료의 징수·감면 등이 큰 효과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 영어·창의마을 수유캠프는 인재개발원이 이전할 예정에 있어, 관악캠프의 민간위탁과 설치·운영에 대해서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바, 평생교육시설 1개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경제적 입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전부개정안은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개정방식의 적정성, 누락된 평생교육기관, 자의적 이용료 결정, 이용료 감면 설계의 적정성, 시민운영위원회의 운영 효과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